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55
----------	-------

발의연월일 : 2025. 7. 3.

발 의 자 : 남인순 · 김 윤 · 이수진
김남희 · 백혜련 · 김남근
강선우 · 이병진 · 조계원
최혁진 · 정일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8월,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는 중증 및 희귀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다녔으나 사례조사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기관 내 적정 인원의 사회복지사를 둬으로써 의료와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커짐.

이 같은 이유로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종합병원 중 18%에 해당하는 곳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으며, 1인당 담당 환자수는 최대 813명에 달하는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적정 인력 배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

복지사의 배치기준과 재정 지원의 내용을 함께 담아 의료현장과 복지 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인 외에 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상담 및 지원, 지역사회연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한다.

1. 종합병원

2.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준수사항) (생 략)	제36조(준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 인 외에 환자의 재활과 사회복 귀를 위하여 상담 및 지원, 지 역사회연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 회복지사를 두어야 한다.
	1. 종합병원
	2.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 수 등을 고 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u><신 설></u>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회 복지사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u><신 설></u>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배 치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